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775

발의연월일: 2025. 3. 10.

발 의 자:김태호·성일종·이인선

진종오 • 유용원 • 정동만

박충권 · 조경태 · 윤영석

이상휘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보훈대상자의 희생과 공헌을 기리고 이들에 대한 교육, 취업, 의료 등 예우에 관한 사항을 추진하기 위해 국가보훈발전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이를 실천하기 위한 연도별 소관실천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국가보훈발전 기본계획과 연도별 소관 실천계획이 적절하게 수립 및 추진되고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보훈발전 기본계획과 연도별 실천계획의 조치 결과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에 관한 사항을 적절히 파악함으로 써 국가보훈대상자를 충분히 예우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연차보고)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기본계획, 실천계획과 그에 따른 조치의 결과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연차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제8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주요내용
- 2. 제9조제1항에 따른 실천계획의 주요내용
- 3. 제9조제4항에 따른 조치의 결과 및 그에 대한 평가 결과
-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보훈발전에 관한 사항으로 국회 보고가 필요한 사항
- ③ 그 밖에 연차보고서의 작성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9조의2(연차보고) ① 국가보훈 부장관은 기본계획, 실천계획과 그에 따른 조치의 결과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 소
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연차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한다. 1. 제8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주요내용 2. 제9조제1항에 따른 실천계획의 주요내용 3. 제9조제4항에 따른 조치의 결과 및 그에 대한 평가 결과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보훈발전에 관한 사항으로 국회 보고가 필요한 사항의 그 밖에 연차보고서의 작성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